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85

발의연월일: 2025. 2. 4.

발 의 자: 박성훈·안상훈·김성원

이인선 • 조배숙 • 김기웅

이헌승 • 박충권 • 임이자

고동진 · 김도읍 · 서지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경찰청 장·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,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

최근 자전거가 교통 및 레저수단으로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가운데,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23년 12,170건이 발생해 2019년 13,157건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, 여전히 한 해 평균 1만2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이러한 노력으로 자전거 도로는 2011년 15,308

km에서 2022년 26,255km로 양적으로는 확충됐지만, 자전거 전용도로는 13.9%에 불과하며,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약 74.8%에 달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임.

특히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,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낙후된 노선이 많아, 자전거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	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
수립) ① ~ ③ (생 략)	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
	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
	의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
	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
	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
	<u>하여야 한다.</u>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	과 같음)